

제 634 호
1978.1.1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5444

시 보

공보준문서는 마이크로
필름으로 환산하였음.
1978. 1. 18
서울특별시 문화공보관

차 례

◎ 교 시

제 1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.....	3
제 2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 , 도로) 결정및 일부변경.....	3
제 3 호 ;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	4
제 4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신설결정및지적 일부변경승인.....	5
제 5 호 :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 , 도로) 변경결정및지적승인.....	5
제 6 호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및지적승인.....	6
제 7 호 : 도시계획시설 (지하도) 변경결정및지적승인.....	7
제 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	7
제 9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신설지적승인.....	8
제 10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 · 공원 · 하수도) 결정.....	8
제 11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.....	10
제 12 호 :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 청사 , 운동장) 결정및지적승인 (정정및변경)	11
제 13 호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.....	12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14 호 : 도시계획시설 (고속철도) 지적승인	12
제 15 호 :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및 지적승인	13
제 16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인가	14
제 17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지적승인	14
제 18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 · 도로) 결정및 일부변경	15
◎ 공 고	
제 1 호 :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공람공고	16
제 2 호 :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 계획공람공고	16
제 3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실시계획공람공고	17
제 5 호 : 분묘이장공고 (1 차)	23
제 6 호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23
제 7 호 : 오물 (쓰레기) 특별청소제외 (비수거) 지역지정공고 ..	26
제 8 호 : 환경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공고	28
제 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28
제 1 호 (성북구공고) : 개인개각공고	31
◎ 예 규	
제 322 호 :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 무처리 요강중개정요강	32
◎ 사 령	
	34

34 - 2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 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426 호 (77.12.9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
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1.6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(공원)지적승인조서

구분	공원종류	공 원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아동공원	만리아동공원	만리동 226-116 일원	9,270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 결정및일부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학교, 도로)를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(77.3.16) 규정

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1.7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설	국민학교(사근국민학교)	성동구 사근동 229-2 일대	9,491 (2,871평)	기존학교
신설	국민학교(행당국민학교)	성동구 행당동 320-60	9,636 (2,915평)	기존학교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설	국민학교 (옥수국민학교)	성동구 금호동 440-12	16,188 (4,891평)	기존학교
신설	중학교 (신정중학교)	강서구 신정동 542-2 일대	26,060 (7,883평)	신설
신설	학 교 용 지	강서구 내발산동 412 번지일대	27,000 (8,168평)	신설
기정	중학교 (강서중학교)	강서구 내발산동 312 부력	11,570 (3,500평)	
변경	중·고등학교 (강서중·고등학교)	강서구 내발산동 산28번지	18,770 (5,678평)	2,178평 추가

나. 도 로 조 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 점	중 점	비고
신정	기정	소로	1	10m	180m	신정동 산43-7	신정동 546-1	
	변경							폐지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

의지 이를 고시한다.

-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8.1.9

서울특별시장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 점	중 점	비고
기정	소로		2 m	30 m	황학동 689	황학동 689	
변경	"		"	"	"	"	폐지
신설	"	4	4 m	25 m	황학동 690	황학동 687	위 폐지노선 대치 도로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 끝.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4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결정
및 지적일부변경승인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
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신설및
지적 일부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
법 제1조및 제13조의 규정과 건

가. 도로신설 및 지적일부 변경조서

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6)의
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
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
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
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
1978 . 1 . 9

서울특별시 장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축로	2	155	15 m	180m	서초동산51-7	서초동 391	공무원교북원진입로
기정	"	"	112	15 m	1,940m	신림동(중 1-56)	신림동(중 3-88)	난곡마을진입로
변경	"	"	"	15 m	1,940m	"	"	신림동 587 부근 180 m구간위치변경)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.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5 호

도시계획시설(하수도, 도로)
변경결정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,
도로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및
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
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
호(77.3.16)의 권한 위임사항에

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
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게 보인다.

1978.1.9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로 조서	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	
기정	소로	3		6 m	918m	신당동 302-4	신당동 381-		
변경	"	2		8 "	1,004 "	" "	" 359-8	현황및장애도로 확장감양조정	

○ 하수도 조서						
구분	시설명	폭 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하수도	6 m	938m	신당동동화극장앞	약수동로타리	
변경	"	6 "	360 "	" 302-4	신당동 386-7	
"	"	5.6 "	300 "	" 386-7	" 379-10	
"	"	6.3 "	190 "	" 379-10	" 381-3	
"	"	5.2 "	88 "	" 321-3	" 381-7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 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6 호

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을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같은법 제 13 조 규정과 건설부

고시 제 41 호 (77.3.16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.

1978.1.10

서울특별시 장

가. 주차장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주차장	중구 남산동 3 가 11-8 일대	992 m ² (300평)	한전중앙변전소주차장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 .

㉞ 서울특별시고시제 7 호

도시계획시설(지하도)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(지하도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 권한 위임 규정

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0
서울특별시장

가. 시설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 도	비 고
개정 변경	지하도 "	반포중합터미널앞 강남중합터미널앞	B = 28.3 m L = 296 m B = 29 m L = 520 m (평균)	상가점용 "
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㉟ 서울특별시고시제 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8 호 (77.12.23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임 사항

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0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목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1		10	430	보광동 80-22	한남동 544-1	
"	"	3		6	150	보광동 75-1	보광동 14-12	
"	"	3		6	30	한남동 684-63	한남동 684-7	

㉞ 서울특별시고시제 9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신설
지 적 승 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5 호 (77. 11.29) 로 시설 결정 고시된 성 동구 관내 자양국민학교 및 선화 예술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

(77.3.16)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 1. 10

서 울 특 별 시 장

o 학교 신설 지적 승인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중 고 등 학 교 (선화예술중고등학교)	성동구 능동산 3-34 의 8 필지	25,723 (7,781.30 평)	
"	국 민 학 교 (자양국민학교)	성동구 자양동 222-6 일대	8,098 (2,449.50 평)	
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

㉟ 서울특별시고시제 10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, 공원,
하수도) 결 정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, 공원, 하수도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 77.3.16)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
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 1. 11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결정조서 가. 노선조서 (천농천)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독원	연장	기 점	중 점	비 고
신설	종로	1	172	20	1,030	담십리동 498 (대 3-10)	군자동 205 (대 3-40)	
"	"	2	151	15	76	" 487 (중 1-172)	담십리 495 (광로 5호)	
"	"	2	152		.35	" 482 (중 1-172)	" 498	
"	소로			10	910	" 498 (대 3-10)	" 492 (대 2-56)	
"	"			8	110	" 492 (대 2-56)	군자동 205 (대 3-40)	
"	"			8	35	" 490 (중 1-172)	담십리 528	
"	"			8	36	" 487 (중 1-172)	" 496-6	
"	"			8	37	" 483-26 (중 1-172)	" 496-9	
"	"			8	37	" 482-55 (중 1-172)	" 497-1	
"	대로	3	122	25	90	" 486 (중 1-172)	담십리동 (광로 5)	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	
나. 공원 결정 조서								
구분	위 치				면 적		비 고	
신설	동대문구 담십리동 492-2앞				1,980 (600평)		아동공원	
"	" 496-2앞				1,997 (605평)			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			

다. 하수도 결정조서						
구분	시설명	규모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하수도	10	1,795	답십리동 673	답십리동 492	전농천

별첨 :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㉠ 서울특별시고시제 11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 권한

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.

1978. 1. 11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일부 변경 및 신설 지적승인 조서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대로	2	18	28 m	3,100 m	원효로 1가	신수동	
변경	"	"	"	28~46 m	"	"	" 공덕동로타리 270 m 구간확폭	
기정	"	2	19	28 m	1,475 m	만리동 광장	공덕동 광장	
변경	"	"	"	28~43 m	"	"	" 공덕동로타리 90 m 구간확폭	
기정	중 3	1	14	20 m	3,300 m	동산역앞광장동측	대흥동	
변경	"	"	"	20~24 m	"	"	" 공덕동로타리 230 m 구간확폭	
신설	대로	3	122	22 m	250 m	공덕동 (대 2-18)	공덕동 (광로 43)	
"	중로	1	174	20 m	80 m	공덕동 (대 2-18)	공덕동 (대 2-19)	
"	"	2	156	15 m	180 m	도화동 17 (중 1-14)	공덕동 444 (대 2-18)	
"	"	2	157	15 m	180 m	도화동 18 (중 1-14)	공덕동 431 (대 2-18)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2 호

도시계획시설 (공용의 청사운동장)
결정및지적승인 (정정및변경)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공용의 청사, 운동장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, 제 13 조와 동법 시행제 7 조 규정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

('77.3.16)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정정 (공용의청사, 운동장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기정	공용의청사 (공무원교육원)	강남구 서초동산33-2부근	152,649 (46,176 평)	서울특별시고시제 394 호 (77.11.4)
정정후	- -	- -	113,040 (34,195 평)	(도면상의변경 없음)
기정	공용의청사 (과학기술정보센터)	동대문구 청량리동 206	22,570 (6,918 평)	서울특별시고시제 408 호 (77.11.25)
변경후	- -	- -	22,704 (6,686 평)	
기정	운동장	영등포구 고척동 69일대	137,000 (41,443 평)	서울특별시고시제 401 호 (77.11.11)
정정후	- -	- -	113,951 (34,470 평)	(도면상의 변경없음)

* 별첨도면생략.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13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7 호 (77.12.19) 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1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중구 태평로 1 가 60 의 18 의 1 필지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

3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881 (266.7 평)

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 가 61 의 1 코리아나 호텔 대표이사장 방갑중

5. 사업자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가. 착수년월일 : 78.1.16

나. 준공예정일 : 78.2.16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14 호

도시 계획 시설 (고속철도)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시설 (고속철도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'77.3.16) 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지하철 건설본부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고속철도 지적승인 조서				
구 간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차량기지 - 성수동	1.2km	군자동 차량기지	성수정차장	
모진동 - 송파	2.5	자양동 219 - 25 앞	송파정차장	
잠실동 - 삼성동	1.9	잠실동 193 - 3 앞	삼성동정차장	

나. 고속철도 부대시설 지적승인 조서					
번호	부대시설명 (정차장)	위 치	폭	연 장	면 적 (㎡)
1	성수동	성수동 2가 300-4 앞	27m	180m	5,040
2	화양동	화양동 7-4 앞	17	170	2,890
3	모진동	성북지청앞	17	170	2,890

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

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) 를 다음과 같이 신설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같은법제 13 조와 건설

부 고시제 41 호 ('77.3.16) 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시흥군청 및 영등포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3

서울특별시장

가. 전기공급설비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 및 규모	비고
신설	154 송전선로	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산 157	연장: 2,848 m	
'	'	- 경기도 시흥군 서면 철산리 366	철탑: 10기	
'	'	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산 157	연장: 3,174 m	
'	'	- 영등포구 오류동 산 42-4	철탑: 13기	
'	'	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산 157	연장: 3,165 m	
'	'	-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159의2	철탑: 9기	
'	'	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산 157	연장: 5,153 m	
'	'	- 영등포구 온수동 산 4-8	철탑: 9기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 고시 제 364 호 (77.10.18) 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에 제 25 조와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 (77.3.16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.

3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8.1.13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의위치 : 도봉구 중계동
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중계동 진입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

로 공사

3. 사업의 규모 : 폭 12 미터
연장 1,380 미터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도봉구청장)

5.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77.11.5 -
78.2.28

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생략

7. 토지조서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규정에 이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16

서울특별시 장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중 학교 (강서중 학교)	강서구 내발산동 312 부력	11,570 (3,500 평)	
변경	중, 고등학교 (강서중, 고등학교)	강서구 내발산동 산 48-6 외 12	18,770 (5,678 평)	추가 2,178 평

나.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끝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
결정 및 일부 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를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('77.3.16) 규정

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.1.20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결정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적 (㎡)	비 고
신설	중 학교 (휘 경 중 학교)	동대문구 휘경동 286-66	13,289 (4,020평)	기존학교
"	중 학교 (중 인 여 자 중 학교)	동대문구 신설동 109 의 5 필	12,774 (3,864평)	"
"	국 민 학 교 (전 북 국 민 학 교)	동대문구 전농동 188 의 7 필	15,227 (4,606평)	"
"	국 민 학 교 (청 양 국 민 학 교)	동대문구 회기동 1-1 의 8 필	16,754 (5,068평)	"
"	국 민 학 교 (서 교 국 민 학 교)	마포구 서교동 341	19,180 (5,801.8평)	"
"	국 민 학 교 (공 덕 국 민 학 교)	마포구 공덕동 256-4	14,102 (4,265.9평)	"
"	국 민 학 교 (창 천 국 민 학 교)	마포구 노고산동 33-1	14,393 (4,354평)	"
"	학 교 용 지	동대문구 장안명 구획정리 87구획	13,223 (4,000평)	"
"	중 고 등 학 교	동대문구 장안명 구획정리 15구획	26,446 (8,000평)	"
"	중 고 등 학 교 (배 화 여 자 중, 고 능 학교)	송로구 필운동 72 의 76 필	32,000 (9,680평)	"

나. 도로조서

구분	등갈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중 점	비고
배화여고	소로	소로	3	6 m	230 m	필운동 25-1	누상동 159-28	폐지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
건축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12 호 (77.9.4) 및 동고시제 213 호 (76.9.4) 로 사업실시계획 인가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지구인 신당 2, 호창 1, 신길 2 및 아현 2 (일부) 동은 5 등 5 개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4 조 및 건축법 제 33 조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계획을 건축법 시행령 제 152 조 제 3 항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사업구역내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에 포함한다.
2. 건축계획서는 당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개별서류 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
1978.1.11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

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
처분 계획공람공고

1. 서울시 고시제 340 호 (77.9.23)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되고 AID차관사업으로 시행중인 마천 1·2·3 구역에 대하여,
2. 도시개발법 제 42 조와 동법 제 65 조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 41 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니다.
3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.

1978.1.11

서울특별시장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실시계획공람공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4 호 ('77. 11.4)로 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 시설 (공용의청사 : 공무원교육원)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/p> <p>1978.1.11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<p>(공람개요)</p> <p>1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서초동 산 33-2 부근</p> <p>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명칭 ;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</p> <p>3. 사업의규모 시행면적 : 113,040 ㎡ (34,195명)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공무원 교육원장)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가. 사업착수일 : '78.2 나. 준공예정일 : '78.12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: (별첨 조서)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: 다음</p>
---	---

토 지 조 서

번호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1	강남구 서초동 산 32	임 야	2,005 평	중구 을지로 2 가 193				
				삼공무남서 을주택조합연합회				
	산 33-2	"	2,603	"				
	산 34-1	"	2,152	"				
	산 34-2	"	50	"				
	산 35-1	"	282	"				
	산 35-2	"	1,398	"				
	산 39	"	2,370	"				
	산 41-1	"	922	"				
	산 41-2	"	544	"				
	산 45-1	"	400	"				
	산 46-3	"	970	"				
산 46-4	"	1,070	"					
서초동 393-1	답	762						

34-18 제 634 호 시 보 1978.1.18

제 634 호 시 보 1978.1.18 34-19

번호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	소초동 393-2	전	987	중구 을지로 2 가 193				
	403-2	답	689	상공무남서울주택조합 연합회				
	404	"	102	"				
	405	"	212	"				
	산 43	임야		"				
2	서초동산 36	"	540	강남구 서초동 350	이동화			
	서초동 391	답	802	"	"	강남구 서초동 350	이범우	가등기
3	산 37	임야	50	송로구 연지동 232	유영근			
4	강남구 서초동							
	산 38	임야	360	동산구 신계동 1-54	유학성			
	서초동 401	답	293	"	"			
	402	"	372	"	"			
5	서초동산 46-2	임야	1,673	마포구 서교동 379-12	박의분			
	산 46-5	"	500	"	"			
	서초동 407	전	523	"	"			

10

34-19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	관 계 자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6	서초동산 48	임야	360	성북구 성북동 114-4	최광식			
7	서초동 392	답	435	경기 시흥 신동 서초리 388	김일성			
8	서초동 393	답	1,111	강남구 청담동산 67-31	최영욱		유혜석 이치현	공유지분
9	서초동 394	전	120	강남구 서초동 424	이형중	과 동	김인순 이종오 이종복 이종학 이종성 이선녀	재산상속
	서초동 395	답	401	강남구 서초동 424	이형중	과 동	김인순 이종오 이종복 이종학	재산상속

34-20

번호	지 번	지목	지저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10	서초동 396	답	452	시흥 신동 서초리 763	이직술			
	서초동 398	"	226	"	"			
11	서초동 397	"	229	영등포구 여의도 1-45	유갑준	중구 소공동 21		근저당
				시범아파트 15-115		유강산업주식회사		
12	서초동 400	답	424	영등포구 여의도동 1-45	최광식	중구 소공동 21		지상권
				시범아파트 15-115		유강산업주식회사		
13	서초동 403-1	답	511	서대문구 대조동 136-3	박중호	중구 소공동 21		지상권
				"	박은경	유강산업주식회사		

11

34-21

번호	지 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수 소	성명	수 소	성명	
14	서초동 403-3	답	543	강남구 서초동 425	김동기			
15	서초동 406	답	388	동산구 정파2가 10-34	이은경			
16	서초동 408	전	79	성동구 마장동 482	이재승			
17	서초동산 40	임야	564	영등포구 여의도동 시 범아파트 6동 723	최남식			
				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145	문금녀			
18	강남구 양재동 산 57-2	임야	454					
19	강남구 양재동 산 60	임야	510					
20	서초동 397	답	208	서대문구 북아현동 138-21	홍재숙			
				" 연희동 546-6	홍정남			
					21-22			

34-22 제 634호 시 보 1978.1.18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5 호

분묘이장공고 (1 차)

당시에서 시행중인 아래 공사구역
내에 매장된 분묘에 대하여 매장및

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및
제 16 조 제 2 항 동법 시행규칙
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
같이 이장할것을 공고 합니다.

1 . 이장대상지역

사 업 명
천호대교 - 시계간 제방축조 공사

지 역
강남구 압사동, 고덕동, 하일동 각일부

2 . 이장요령

연고자는 반드시 당시 하수국
치수과 (전화 75-6648) 또는 천호
출장소 토목과 (전화 48-0546) 와
위 공사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관
사무실 (전화 48-3191) 에 비치된
관계도서상 공사구역내에 포함되었
는지를 확인 하시고 공사구역내에
포함된 분묘는 이장신고를 필한후
이장하시고 이장완료후 소정의 보
상비를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3 . 이장신고기간

1978 년 1.월 18 일부터 1978 년
2 월 17 일까지 (1 개월간)

4 . 무연 분묘처리

위 공사 구간내에 소재한 분묘
를 이장치 않을때는 무연 분묘로
간주하고 당시에서 매장 및 묘지
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의 이
장 하겠습니까.

1978 년 1 월 일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실시
계획 공람공고

1 . 서울특별시 고시제 17 호 ()

로 고시된 와룡동 도로확장공사
구간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의 도
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
도시계획 법제 25 조 및 동법제
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
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의 공
하고자 이에 공고함.

2 .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
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나 미
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
갈음함.

3 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
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
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8 . 1 . 14
서울특별시장

<p>공 략 개 요</p> <p>1 . 사업장위치 : 명륜동 1가 15 - 3 = 와룡동 1 - 1171 간</p> <p>2 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와룡동 도로 확장공사</p> <p>3 . 사업의 규모 : 도로 = 5 - 8 = 360</p> <p>4 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</p>	<p>5 . 사업착수및준공예정 : 1978 . 1 - 1978 . 2 . 28 .</p> <p>6 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별첨 토지조서</p> <p>7 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다음</p>
--	---

토 지 감 정 명 세 표

일련번호	소재지	지목	면적	소유자	성명
1	명륜동 1가 15- 3	대지	6.4	15	하광선
2	" " 15- 4	"	27.3	" 1	
3	" 3가 2-45	"	1.9	2-1	강철
4	" " 2-46	"	0.7	2-39	이원식
5	" 1가 15- 5	"	42.8	15-11	조종인
6	" " 14- 3	"	28.1	14	황경학
7	" " 10-60	"	8.2	12	변종택
8	" " 12- 1	"	34.6	"	
9	" " 10-61	"	38.9	명륜 3가 53-	신익균
10	" " 10-63	"	43.4	10-20	이운극
11	" " 10-62	"	43.1	"	박장규
12	" " 10-25	"	23.8	창신동 197	조종희
13	" " 10-64	"	31.4	10-43	박호성
14	" " 10-59	"	10.2	10-13	김준엽
15	" " 10-26	"	7.3	10-22	김종락
16	" 3가 1- 1	"	13.2	10-15	최병국
17	" " 1- 2	"	9.6	1- 2	박종건
18	와룡동 1-1140	"	0.3		

34-24

일련번호	소재지	지목	면적	소유자	성명
19	와룡동 1-1167	대지	11.9	창신동 1-204	우정명
20	" 1-1168	"	0.6	" 1-213	이정수
21	" 1-1142	"	9.8	" 1	송창섭
22	" 1-1169	"	9.9	" 1-348	신용진
23	" 1-1165	"	13.7	" 1-193	서옥덕
24	" 1-1164	"	16.0	" 1-189	임대보
25	" 1-1163	"	26.9	"	채희중
26	" 1-1162	"	10.3	" 1-141	안종식
27	" 1-184	"	27.4	" 1-605	윤우래
28	" 1-1155	"	2.2	" 1-605	유광노
29	" 1-1154	"	6.4	" 1-139	임선
30	" 1-1153	"	30.7	" 1-136	박의근
31	" 1-1152	"	28.3	" 1-135	이진낙
32	" 1-1151	"	31.4	" 1-29	한준삼
33	" 1-1150	"	1.6	" 1-207	도학진
34	" 1-1149	"	2.1	"	"
35	" 1-1148	"	30.4	" 1-121	박창서
36	" 1-1147	"	0.3	"	"
37	" 1-1141	"	3.1	" 1-6	고영준
38	" 1-153	"	21.9	" 1-153	공창용
39	" 1-154	"	34.8	" 1-154	윤여학
40	" 1-155	"	41.3	경남나주역산품만산	윤익선
41	" 1-156	"	37.9	219-3 1-156	서점식
42	" 1-157	"	14.3	1-157	김중혁
43	" 1-22	"	0.8	명륜3가 1-10	진필식

일련번호	소재지	지목	면적	소유자	성명
44	와룡동 1-1144	대지	11.4		
45	" 1- 23	"	34.7	1-23	차계환
46	" 1- 24	"	16.5	동송동 2-25	이창갑
47	" 1-1166	"	18.7	" 1-181	송창권
48	" 1-1172	"	6.5	" 1-211	임판순
49	" 1-1170	"	3.1	" 30-6	노덕삼
50	" 1-1171	"	23.2	" "	"
51	명륜1가 10- 65	"	70.8	" 10-22	양창갑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7호

오물 (쓰레기) 특별청소 제외
비수거 지역 지정공고

오물 청소법 제 3조 제 1항 단서
및 동법 시행령 제 1조 제 1항의

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청소
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다음과
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.

1978. 1. 19

서울특별시장

특별청소 제외지역 (동)

특별청소일부 제외지역 (일부동)

구, 출장소	동 명	통 명	구, 출장소	동 명	통 명
도봉	중계동	전지역	동대문	면목 5동	17-21
강남	일원동	"		북동	1- 5
천호	하일동	"		망우동	1- 6
강서	과해동	"		신내동	1-19
제	4 동				

구출장소	동 명	통 명
마 포	성산 2 동 상암동	3, 4, 5, 6, 8, 16, 1-15, 7-11
영등포	가리봉 1 동	16 - 20
	가리봉 2 동	15, 18
	독산 1 동	6, 7, 8, 10, 11, 12, 15, 16, 17, 18
	독산 2 동	1 - 9, 12 - 17, 21 - 24, 31 - 40
	시흥 2 동	1, 3, 4, 5
	시흥 3 동	1, 4
	고척 동	20, 21, 22, 23, 24, 25, 31
	개봉 1 동	1, 5, 12
	개봉 2 동	12, 14, 19, 20
	오류 1 동	25 - 30
오류 2 동	3 - 6, 14 - 20	
강 남	서초 동	2, 3, 4, 6, 7, 8, 10, 12
	내곡 동	4, 6, 7, 9, 11, 13
	세곡 동	3, 4, 5, 6, 7
	도곡 동	1 - 6
은 평	불광 1 동	8, 9, 10, 21, 22, 23, 24
	불광 2 동	1, 2, 5
천 호	명 일 동	10, 15
	암 사 동	38, 39, 40
	거 여 동	24, 25
	마 천 동	1, 2, 4, 29
	송 파 동	1, 2, 3, 19, 20, 21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8 호

환지 계획 변경인가 및
환지 예정지 지정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336 호 (77.12.30) 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 11 항 3 호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 하였기 공고 합니다.
2. 환지예정지 변경 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3. 본 공고 사항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될 것이나,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.

1978. 1.

서울특별시장

- 환지 변경 내역 -

- 1) 사업명 :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

- 2) 변경위치 : 가. 강남구 삼성동 5의 60 호의 107 필지 (5,709.4 평)
나. 67 구획 중학교 용지 (5,150 평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9 호

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실시
계획 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7 호 (77.12.9) 로 고시된 염천교 확장 공사 구간내에 저축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.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.
3. 관계도서는 중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8. 1. 21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1. 사업장 위치 : 남대문-중립동간 (의주로 2 가동 61 의 6 - 봉래동 2 가 1 의 19)

<p>2. 사업의 종류와 명칭: 염천교 확장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자. 폭=22m → 30.8m 나. 연장=25m → 50m</p> <p>4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청</p>	<p>5.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: 78. 2. 10 - 78. 12. 30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별첨 토지 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</p>
--	--

토 지 조 서

지 번	지목	면적	소 유 자		관계인		비 고
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소	
의주로2가동 61의13	대지	6.5	김 광 휘	의주로2가61의13			
의주로2가동 61의6	"	1.7					
봉래동2가 1의14	"	10.0	정 해 월	의주로2가59			
" 1의15	"	2.0	김 의 주	만리동2가154-5			
" 1의16	"	1.8	정 만 춘	의주로2가61			
" 1의17	"	2.0	황 의 완	"			
" 1의18	"	1.8	"	"			
" 1의19	"	4.0	김 광 휘	의주로2가61의13			

건 물 조 서

지 번	구 조	평 수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
의주로 2가동 61의 13	철근콘크리트소	6.5	김 광 휘	의주로 2가 61의 13			
" 61의 6	"	1.7					
봉래동 2가 1의 14	"	10.0	정 해 월	의주로 2가 59			
" 1의 15	"	2.0	김 의 주	만리동 2가 154-5			
" 1의 16	"	1.8	정 만 춘	의주로 2가 61			
" 1의 17	"	2.0	황 의 완	의주로 2가 61			
" 1의 18	"	1.8	"	"			
" 1의 19	"	4.0	김 광 휘	의주로 2가 61의 13			

34-30 제 634호 시 보 1978. 1. 18

성북구공고 제 1 호

공인제작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
을 제작하였기 는 조례 제 9 조의
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7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1. 제작사용년월일 : 1978. 1. 4
09:00

2. 제작된 직인 및 세인 :

중앙제 2 동장인

서원북제 3 동장인

강원북동장인

학원제 1 동장인

3. 공인제작인명 : 다음

동명

제

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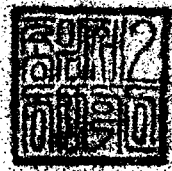
인

제

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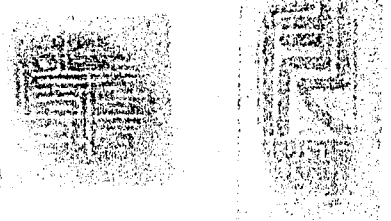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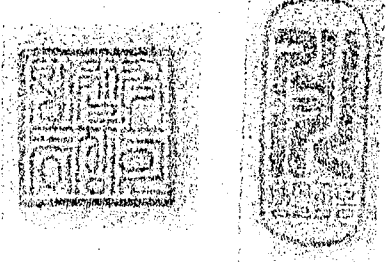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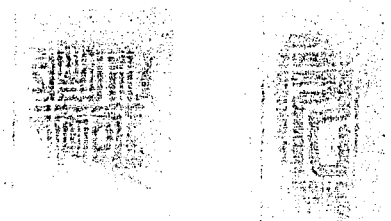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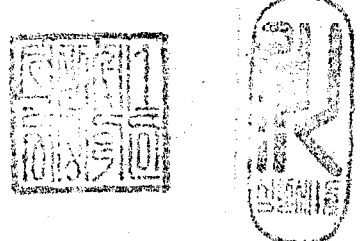
인

상
원
제
2
동



하
원
북
제
3
동



종명	개 작 인	개 작 인
상 참 포 증		
관 세 증		

예

◎ 서울특별시예규 제 322 호

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
처리요상증개

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처리요상증
개정요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 직업안정업무처리요상증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78년 1월 20 일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(업무범위) 구청장(출장소장
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은 다음

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

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1, 2종 직업안내소에 대한 지휘감독과 영업정지 처분 및 그 종사자의 교육훈련
 - 2. 직업안정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, 제10조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진달
 - 3. 1, 2종 직업안내사업허가사항 변경
 - 4. 무허가직업소개행위 단속
- 제6조중 "(공공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)"을 "(공공 및 1종 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)"으로 한다.
- 제7조중 "(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)"을 "(2종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)"으로 제1항중 "직업안내소"를 "2종 직업안내소"로 하고 제3항1호중 "번호"를 "주민등록번호"로 한다.
- 제8조중 "(구인구직접수)"를 "(공공 및 1종직업안내소의 구인구직접수)"로 한다.
-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9조(장부등의 관리) ① 공공 1, 2종 직업안내소장은 구인표 및 구직표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거 직종별(세분류)로 분류하고 취업을 알선한 자, 구인 또는 구직을 취소한 자, 신청후 60일 이내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구인표와 구직표는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②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

장부는 1년간 보관한다.

- 제11조중 (안내소의 직업상담)을 "(직업안내소의 직업상담)"으로 한다.
- 제15조중 제1호, 제3호 및 제4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호에 사,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.
 - 3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0일에 처한다.
 - 4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.
- 바. 법 제26조에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
- 사.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장부등을 1년간 보관하지 않은 자
- 아. 전 각목의 경우 이외의 행정 명령을 위반한 자
-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17조(보고) ①구청장은 1, 2종 직업안내소의 직종별 구인, 구직 취업현황과 지도현황을 다음 분기계시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구청장은 1, 2종 직업안내소의 영업정지처분과 허가사항을 변경

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7일
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
다.

사 령

◎ 1978. 1. 5

주택건설사업소 선병순
지방행정사무관
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
1항2호의 규정에 의거 그
직위를 해제함.

신 규 소병만
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
종로구 근무를 명함.

◎ 1978. 1. 9

제1근로자회관 이기주
지방행정서기보
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
1,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
1월에 처함.

문화회관 양영길
지방행정서기보

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
1,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
1월에 처함.

중 구 심상용
지방행정주사

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1항
1,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
1월에 처함.

◎ 1978. 1.10

양 정 과 양낙범
행 정 주 사
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

영 등 포 구 양재근
지방행정주사보
경제기획원 진출을 명함.

새마을지도과 이태희
지방행정수사보
경제기획원 진출을 명함.

◎ 1978. 1.19

천호출장소 허운철
지방행정사무관
원에 의하여 그 직을
면함.